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진석의원 · 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695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9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권영진 · 안철수

염태영 · 윤영석 · 김은혜

민홍철 · 복기왕 · 김동아

전용기 · 박용갑 · 김문수

한정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 · 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,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·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民間에서는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民間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음.

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 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, 덤픽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

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.

이에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民間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).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의 제목 “(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)”을 “(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장하기”를 “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”로, “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대가 기준”을 “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”를 “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(準用)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사 대가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의3(<u>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</u>)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<u>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9조의3(<u>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</u> ----- <u>제3항</u> ----- <u>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</u>-----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(準用)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